

이 우편물에는 두 건의 법적 통보문이 동봉되어 있음: (1) 미국 Lufthansa 집단 소송 합의 통보문 및 (2) 캐나다 Lufthansa 집단 소송 합의 통보문.

귀하께서는 하나 이상의 집단 소송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통보문을 모두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보문은 미국 LUFTHANSA 집단 소송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법적 통보문입니다

이 통보문을 회사 본사/법률 고문에게 전달하십시오(해당될 경우)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미연방 뉴욕동부 지방 법원)

IN RE (관련 건)

AIR CARGO SHIPPING SERVICES
ANTITRUST LITIGATION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독점 금지 소송)

MDL 번호 1775

기본 서류 06-MD-1775 (JG) (VVP)

독일측 피고 DEUTSCHE LUFTHANSA AG, LUFTHANSA CARGO AG 및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측과의 소송에서 제안된 8,500 만 달러 상당 집단 소송 합의에 관한 통보

수신: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사이에 화물 운송 주선 업체를 통해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개인을 비롯하여, 어느 항공 화물 운송 업체이든지, 이를 통해 미국 국내, 미국 도착, 미국 출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모든 개인들.

통보문 전문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귀하의 권리가 현지 관련 법원에서 계류 중인 법적 소송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8,500 만달러 상당의 합의 기금 배분을 원할 경우, 이 통보문을 통해 그에 따른 절차를 비롯하여 집단 소송과 관련된 귀하의 옵션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보문은 Rule 23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민사 절차에 대한 연방법 규칙 제 23 조) 및 Order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미연방 뉴욕 동부 지방 법원 - "법원") 명령에 따라 제공됩니다.

이 통보문의 목적은 현재 제기되어 법원에서 계류 중인 법적 집단 소송("소송") 및 피고측인 Deutsche Lufthansa AG, Lufthansa Cargo AG, 및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 (총칭하여 "Lufthansa")와의 부분 합의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Lufthansa 및 이 합의의 구성원이 아닌 그 외 다른 피고들(아래 정의됨)은 미국 반독점법과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 판매법(아래 정의됨)을 위반하였습니다. 미국 국내, 미국 도착, 미국 출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해 제기한 보상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Lufthansa 는 8,500 만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보상 청구 제기에 협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법원은 2008년 12월 12일, Lufthansa 합의안의 승인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 공정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정 심의회 목적은 Lufthansa 합의안의 공정성, 합리성 및 충분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건 합의와 관련된 귀하의 옵션은 이 통보문 후반부에 설명되며 다음은 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 1. Lufthansa 합의 집단 잔류 및 분쟁 조정 신청서 제출하기.** 우편으로 이 통보문을 수령했을 경우, 이 통보문에 이미 분쟁 조정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령하신 것입니다. 이 통보문을 온라인으로 보거나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으로부터 우편 수령하는 방법 이외 다른 방법으로 통보문을 수령한 경우,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통하거나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전화 연락하여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수신자 부담) 지역은 1 (800) 749-3518 번; 해외 지역은 (통화료 부과) 1 (941) 906-4822 번을 이용하십시오. 각 지역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보문에 동봉되며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
- 2. Lufthansa 합의 집단 서면 탈퇴 요청서.** 탈퇴를 요청할 경우, Lufthansa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만약 Lufthansa 합의안 승인 명령 절차에 들어가면 면제 조항이 귀하에 대해 구속력을 지닙니다. 탈퇴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시고 www.aircargosettlement.com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3. Lufthansa 합의 집단 잔류 및 이의 제기.** 귀하께서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으로서 계속 남아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Lufthansa 합의에 어떤 측면에 대해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서 제출 마감일은 2008년 11월 12일까지입니다.
- 4.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고 분쟁 조정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Lufthansa 합의 기금에 의한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Lufthansa 를 면제 조항에서 설명된 보상 청구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I. 집단 소송의 배경

A. 집단 소송이란 무엇인가?

집단 소송이란 원고들을 대표하는 몇몇 대표자가 자신들 및 자신들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원고측 대표, 법원 및 집단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 모두 모든 집단 구성원의 권익이 충분히 대변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집단 변호인단의 변호사 수임료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단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은 합의 기금에서 지급되며(또는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단이 피고측과 제안된 합의에 들어가면(이 건에서는 Lufthansa 가 피고임) 법원 명령에 따라 집단에게 합의에 관한 통보를 하고 의견 청취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제안된 합의안의 공정성, 합리성 및 충분성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B.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Lufthansa 와 나머지 다른 피고들은 할증료 부과(항공 화물 운송사들이 예를 들면 “연료 할증료” 또는 “보안 할증료”와 같은 특별 추가 비용 명분으로 정상 운송료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요금), 가격 할인의 철폐 및 방지 공동 합의, 수익 및 고객 할당 공동 합의 등의 수법 등, 모두 미국의 반독점법과 주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통해 항공 화물 운송료의 담합, 인상, 유지, 또는 고착화를 공모하였습니다. 원고측이 주장한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원고측은 자신들과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가 없었을 때 지불했어야 하는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Lufthansa 이외에 이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된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AC Cargo LP	Japan Airlines International Co., Ltd.
Aerolineas Brasileiras S.A (d/b/a Absa Cargo Airline)	Kenya Airways Ltd.
Air Canada	KLM Royal Dutch Airlines
Air China Cargo Company Ltd. (d/b/a Air China Cargo)	Korean Airlines Co., Ltd.
Air China Ltd. (d/b/a Air China)	LAN Airlines S.A. (f/k/a LAN Chile S.A.)
Air Mauritius Ltd.	Lan Cargo S.A.
Airways Corporation of New Zealand Ltd. (d/b/a Airways New Zealand)	Martinair Holland N.V.
Alitalia Linee Aeree Italiane S.p.A.	Nippon Cargo Airlines Co., Ltd.
All Nippon Airways Co., Ltd.	Polar Air Cargo, Inc.
Asiana Airlines, Inc.	Qantas Airways Ltd.
Atlas Air Worldwide Holdings, Inc.	Scandinavian Airline Systems AB
British Airways PLC	Saudi Arabian Airlines, Ltd.
Cargolux Airlines International S.A.	Singapore Airlines Cargo PTE, Ltd.
Cathay Pacific Airways, Ltd.	Singapore Airlines, Ltd.
DAS Air Ltd. (d/b/a Das Air Cargo)	Société Air France
El Al Israel Airlines	South African Airways (Proprietary), Ltd.
Emirates Airlines (d/b/a Emirates)	Thai Airways International Public Co., Ltd.
Ethiopian Airlines Corp.	Viação Aérea Rio-Grandense, S.A. (“VARIG”)

원고와 합의안을 체결한다고 해서 Lufthansa 가 이 사건에서 원고측이 주장한 불법적 행위를 시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Lufthansa 가 원고와의 합의안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Lufthansa 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변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Lufthansa 는 불법적인 반독점 활동을 정부 조사관에게 조기에 보고하는 기업에게 관용을 베푸는 정책인 U.S. Department of Justice Antitrust Division(미법무부 반독점국)의 관용 프로그램에 착수했습니다. Antitrust Criminal Penalty and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Pub. L. No. 208-137,118 Stat. 665 (June 22, 2004) (“ACPERA”) (2004년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혁법, 공법 번호 208-137,118 Stat. 665 (2004년 6월 22일) [가 ACPERA 에]) 하에서 Lufthansa 가 원고측과 충분히 협조하면 민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Lufthansa 의 잠재적 배상 책임이 상당히 한정됩니다.

원고와 Lufthansa 양측 모두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측 주장의 정확성 여부, 또는 Lufthansa 나 그외 기타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 개입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C. Lufthansa 합의 집단의 정의

2008년 4월 4일자 법원 명령에 따라, 법원은 잠정적으로 Lufthansa 합의 집단을 인정했으며 정의된 Lufthansa 합의 집단(“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에 소속된 모든 개인과 법인에게 이에 대해 통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Lufthansa 합의 집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화물 운송 주선 업체를 통해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모든 개인과 법인을 비롯하여 어느 항공 화물 운송 업체이든지 (이 소송건에서 지명된 피고들, 특히 Lufthansa 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이를 통해 및/또는 지명되었거나 지명되지 않은 공모자들(총칭하여 “피고”)을 통해 미국 국내, 미국 도착, 미국 출발 항공 화물 운송(미국 캐나다간 화물 운송은 제외)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개인과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피고, 각 피고의 모회사, 직원, 자회사 및 제휴사 그리고 모든 정부 기관은 합의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는 미국내, 미국 도착, 미국 출발 화물 운송을 위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Lufthansa 합의 집단은 이 소송건에서 제안된 집단으로 정의된 집단과 별개임에 유의하십시오. Lufthansa 합의 집단에는 이 소송건에서 피고로 지명되지 않은 항공 운송 회사를 포함하여, 어느 항공 화물 운송 회사이든지 이를 통해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들이 포함됩니다.

II. LUFTHANSA 와의 제안된 합의안 요약

다음은 제안된 Lufthansa 합의안에 관한 요약 설명입니다. Lufthansa 합의안(지금까지 개정된 4 가지 개정 조항 포함)은 이 통보문에 명시된 주소로 해당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공식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웹사이트인 www.aircargosettlement.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Lufthansa 합의 집단을 대리하여 원고는 Lufthansa 합의안을 체결했습니다. Lufthansa 는 8,500 만달러(발생 이자 별도 추가)를 지급하고 합의 집단 변호인단이 나머지 다른 피고들을 대상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때 협조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Lufthansa 에서 지급하기로 한 8,500 만달러와 이자(“Lufthansa 합의 기금”)는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한 합의 집단 구성원들이 탈퇴하지 않고 Lufthansa 합의 집단에 계속 남아 유효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었다면 지급받았을 금액을 참작하여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안 제 46 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만약 Lufthansa 합의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되었을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기 위해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한 측과 Lufthansa 가 서로 합의할 경우, Lufthansa 는 Lufthansa 합의 집단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안 제 65 조를 참조하십시오. Lufthansa 는 이 소송에서 Lufthansa 합의 집단을 대리하여 자신에게 제기한 모든 보상 청구로부터 면제될 것입니다. 이 소송은 비화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이 소송은 Lufthansa 합의안의 면제 조항에 의거하여 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된 모든 보상 청구에 대해 Lufthansa 를 대상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A. 협력 사항

Lufthansa 합의안에 따른 Lufthansa 의 협력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Lufthansa 의 미국내, 미국 도착, 미국 출발 항공 운송 서비스 영업에 관한 서류와 자료 제공
-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가격 설정이나 고객과 관련된 둘 이상의 피고간의 실제 또는 잠재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모든 서류 제공
- Lufthansa 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미법무부), European Commission(유럽 집행 위원회) 또는 항공 화물 운송업계를 조사하는 그외 기타 국가 경쟁 관리 정부 당국에 제출한 미국내 미국 도착 또는 미국 출발 항공 화물 교역에 관한 모든 서류(그러나 Lufthansa 의 변호사가 그러한 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는 제외됨)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또한, Lufthansa 는 합당한 요청이 있을 시 원고의 주장과 관련 있는 기타 서류들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Lufthansa 는 또한 Lufthansa 합의안에 의거한 협조에서, 소송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에서 합의 집단 변호인단과 수시로 만나는 일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에 Lufthansa 는 이른바 반경쟁 행위에 관해 알려진 모든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Lufthansa 는 이미 U.S. Department of Justice(미법무부), European Commission(유럽 집행 위원회), 그리고 항공 화물 운송업계를 조사하는 그외 기타 국가 경쟁 관리 정부 당국과의 인터뷰를 수행한 Lufthansa 의 전현직 종역, 임원,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뷰, 진술이나 진술서, 조서 작성, 그리고 법정 증언에 협력하도록 할 것임에 이미 동의했습니다. Lufthansa 는 재판 및/또는 조서 작성 시, 또는 진술서 작성이나 진술 과정에서 Lufthansa 가 본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서류와 Lufthansa 의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영업 및/또는 관련 할증료에 관한 증거에 접근하는 데 적격으로 결정된 대리인을 제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B. 면제

귀하께서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은 경우, LUFTHANSA 합의안이 최종적인 것이 되면, 귀하께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LUFTHANSA 합의 기금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LUFTHANSA 를 아래 설명된 보상 청구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그러한 LUFTHANSA 합의안의 면제 조항은 귀하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Lufthansa 가 8,500 만달러(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한 구성원을 고려하여 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를 지급하고 Lufthansa 가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보상 청구 면제 조항에 구속되며, 이는 합의안에 명시된대로 집단 소송 판결에 포함될 것입니다.

“**보상 청구**”란 모든 고소, 소송, 손해 배상 청구, 권리, 요구, 주장, 진술, 고소 사유, 분쟁, 법적 절차, 손해, 피해, 부상, 변호사 수임료, 비용, 경비, 부채, 유동 부채, 의견 또는 구제책(형평법상의 또는 보통법상의)을 의미합니다.

“**피면제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수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Lufthansa 및 이의 전신, 후신, 모기업, 자회사, 디비전, 부서, 제휴사, 상속자, 집행자, 관리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간부, 임원, 주주, 파트너, 대리인, 변호사, 하수인, 직원, 그리고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위에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면제 당사자”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이 소송에서 이전에 또는 현재 피고로 지명된 그외 기타 피고, (ii) 이 소송에 나중에 추가되거나 합류한 그외 기타 피고, (iii) 그외 기타 공모자 및/또는 (iv) 인터뷰, 진술이나 진술서, 조서 또는 법정 증언에 대한 합의 집단 변호인단의 합당한 요청을 거부한 모든 전직 Lufthansa 직원, 간부, 임원(묵비권 청원은 협조 거부로 간주될 것입니다).

“**면제 당사자**”는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원고 및 원고 자신들을 대리하고,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를 통해 상속자, 관리자, 수증자, 전임자, 후임자, 모기업, 자회사, 모든 유형의 대리인, 주주, 파트너, 임원, 모든 유형의 소유주, 제휴사, 양수인, 에이전트, 직원, 하청업체, 변호사, 또는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대리하는 모든 [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 그리고 원고를 대리하고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를 통해 상속자, 관리자, 수증자, 전임자, 후임자, 모기업, 자회사, 모든 유형의 대리인, 주주, 파트너, 임원, 모든 유형의 소유주, 제휴사, 양수인, 에이전트, 직원, 하청업체, 변호사, 또는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대리하는 합의 집단 변호인단을 의미합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면제 당사자는 이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미심쩍거나 확실한, 단정적이거나 불확실한, 예측된 것이나 의외인, 사실상의 또는 우발적인, 해결 또는 미해결 청구로서 어느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어떤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서든지, 전세계 어느 국가 또는 법적 관할권에서든지 법적 이론과 상관 없이, 그리고 요구된 피해 구제 유형이나 구제 금액과 상관 없이, 면제 당사자들 중 그 누구든지에 의해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었거나 또는 향후 주장될 수 있는 청구를 비롯하여, 미국 국내, 미국 도착, 미국 출발 화물 운송을 위해 **Lufthansa** 와 그외 기타 항공 화물 운송 회사(본 소송건에서 지명된 피고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가 제공한 항공 화물 운송 가격이나 이에 대한 보수에 기인하여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보상 청구(그리고 구체적으로 화물 요금, 연료 할증료, 보안 할증료, 미국 세관 할증료, 전쟁 위험 할증료, 수수료, 인센티브, 리베이트, 크레딧, 이익, 또는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의 비용이나 이와 관련된 보수를 구성하는 그외 모든 요소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된 모든 보상 청구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부터, 그러한 보상 청구가 연방법, 주법, 지방법, 법원 명령이나 보통법 또는 그외 기타 법률, 법전, 규칙, 또는 외국이나 해외 다른 지역의 법적 관할권의 규정을 근거로 하든지간에, 피면제 당사자를 영구히 면제 방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실, 계약 위반, 보석, 계약 불이행, 분실물, 피해 물품이나 지연 물품을 근거로 한 모든 개별적 보상 청구나 **Warsaw Convention**(바르샤바 조약)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이와 유사한 보상 청구는 이 조항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오로지 2006년 9월 30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만 한정된 모든 보상 청구는 이 조항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Lufthansa** 는 면제에서 제외된 모든 보상 청구에 대해 모든 권리와 변론을 명시적으로 보유합니다.

면제 당사자는 본 소송이나 [앞 문장에서] 면제된 보상 청구에 기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일처리, 사건, 정황, 행위, 행위 불이행 또는 모든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피면제 당사자도 고소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 조항은 [**Lufthansa**] 합의안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 .

[위 설명된 면제 및 서약]을 근거로 면제 당사자에 의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면제가 성립됩니다.

이 면제 조항에 의해 “일반 면제는 채권자가 본 면제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만약 채권자가 인지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을 보상 청구로서,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보상 청구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각각 규정한 **Section 1542 of the California Civil Code**(캘리포니아 민법 제 1542 항) 및 **Section 20-7-11 of the South Dakota Codified Laws**(사우스 다코타의 규약법 제 20-7-11 항)의 기관 및 이와 유사한 모든 조항, 법령, 규정, 규칙 또는 법적 원칙 또는 그외 다른 주 또는 사법 관할권의 형평법의 기관이 성립됩니다. 이 단락에 명시된 포기 및 기관과 관련하여, 원고와 각 합의 집단 구성원은 [**Lufthansa**] 합의안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들 자신이 진실로 인지하거나 또는 진실로 믿는 그러한 사실에 추가하여 또는 그러한 사실과는 별개의 사실을 그 이후에 듣거나 발견할 수 있음을 인지하나, 모든 피면제 보상 청구[위 명시된 면제]를 영원히 완전히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며, 그러한 의도를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면제는 그러한 추가적 또는 별개의 사실의 발견이나 존재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발생하고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 * * * *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명시된 보상 청구 이외의 모든 청구 사항은 Lufthansa 합의안에 따른 합의 또는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피고, 공모자, 합의 집단 변호인단의 합당한 인터뷰, 진술이나 진술서, 조서 또는 법정 증언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전직 Lufthansa 직원, 간부 또는 임원, 또는 피면제 당사자 이외 기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의 모든 권리는 특별히 원고와 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III. 캐나다 집단 소송

이 우편물에는 Lufthansa 를 상대로 한 캐나다 집단 소송 합의에 관한 통보문이 동봉되어 있습니다("캐나다 Lufthansa 합의"). 캐나다 Lufthansa 합의는 다음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2000 년 1 월 1 일부터 2006 년 9 월 11 일 사이에 화물 운송 주선 업체를 통해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과 법인을 비롯하여, 어느 항공 화물 운송 업체이든지, 이를 통해 캐나다 국내, 캐나다 도착, 캐나다 출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모든 개인과 법인.

그러나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캐나다 간의 화물 운송을 위한 모든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에는 캐나다 Lufthansa 합의가 아니라 여기서 논의된 미국 Lufthansa 합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IV. 이 합의 하에서 집단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옵션

A. Lufthansa 합의 집단 잔류 및 분쟁 조정 신청서 제출하기

위 섹션 I (C)에서 정의된 Lufthansa 합의 집단 범위 이내에 속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탈퇴를 선택하지 않는 한 Lufthansa 합의 집단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원고 대표와 합의 집단 변호인단이 Lufthansa 합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귀하의 권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성원 개인은 자비로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원에 출두시켜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이 통보문을 수령한 경우 분쟁 조정 신청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문을 온라인으로 보거나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으로부터 우편 수령하는 방법 이외 다른 방법으로 통보문을 수령한 경우,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통하거나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손해 배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전화 연락하여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수신자 부담) 지역은 1 (800) 749-3518 번; 해외 지역은 (통화료 부과) 1 (941) 906-4822 번을 이용하십시오. 각 지역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보문에 동봉되며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 또는 다음 주소로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서면 요청하셔도 됩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작성된 분쟁 조정 신청서는 반드시 또는 다음 주소로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반드시 2009 년 2 월 12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만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귀하의 신청서는 거부되어 Lufthansa 합의 기금에 의한 보상금 할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B. Lufthansa 합의 집단 탈퇴 절차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 탈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 (1) 요청인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2)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사이에,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했고 Lufthansa 합의 집단 탈퇴를 요청하는 모든 모기업, 자회사나 제휴사뿐만 아니라 요청인 또는 요청인의 비즈니스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모든 상호나 회사 명칭, 주소
- (3) 소송 사건명(관련 건: *Air Cargo Shipping Services Antitrust Litigation –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독점 금지 소송)*)
- (4) “본인은/우리는 이로써 *Air Cargo Shipping Services Antitrust Litigation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독점 금지 소송), MDL 1775* 의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기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명 진술
- (5) 또한 요청인이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위해 사용한 모든 항공 화물 운송 회사와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지불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요금

Lufthansa 합의 탈퇴 요청서는 반드시 1 종 우편으로 (가능하면 등기 우편으로) 다음 주소로 제출하고 2008년 11월 12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비록 이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행위에서 비롯된 보상 청구를 근거로 피고 중 그 누구에 대해서든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더라도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려면 반드시 위 명시된 방식대로 마감일까지 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할 경우, Lufthansa 합의안에 의해 구속받지 않으며, 개인 비용으로 Lufthansa를 상대로 독자적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퇴할 경우 Lufthansa 합의 기금에 의한 보상 할당금을 받을 자격이 소멸됩니다. 탈퇴에 관한 안내 역시 합의에 관한 웹사이트인 www.aircargosettlement.com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C. 합의안 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

아직까지 Lufthansa 합의 집단 탈퇴 요청을 하지 않고 합의안에 반대할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단을 통해 (개인 비용으로) 공정 심의회에 출두하여 적절하고 상관이 있다고 간주하는 증거나 주장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의 제기가 고려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출두 의향 통보
- (2) 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임을 입증하는 증빙
- (3) 이의 제기의 구체적 배경과 법원에 출두하여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 법원에서 고려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모든 문서나 서면 자료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그러한 서면 이의 제기서는 반드시 섹션 VII 에 명시된 주소로, 2008년 11월 12일까지 법원과 합의 집단 변호인단 및 Lufthansa 변호인단 양측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못했을 경우 이의 제기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소송건이나 그외 다른 소송 또는 법적 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될 것입니다.

D.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고 분쟁 조정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Lufthansa 합의 기금에 의한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Lufthansa 를 면제 조항에서 설명된 보상 청구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V. PLAN OF ALLOCATION(보상금 할당 계획)

법원은 합의 기금 할당 계획을 승인했습니다(법원에서 승인한 변호사 수임료와 Lufthansa 합의 집단 구성원의 소송 경비 환급금; 세금이 있을 경우, Lufthansa 합의 기금의 세금 및 세금 관련 비용 지출; 본 통보문 섹션 II (B)에서 설명된 탈퇴로 인해 발생한 공제액; Settlement Agreement (합의안) 제 61 항에서 설명된 중재 비용(해당될 경우)을 제외한 최종 금액). 다음은 Plan of Allocation (“POA”) (보상금 할당 계획 [“POA”]) 요약입니다.

POA (보상금 할당 계획) 는 유효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Lufthansa 집단 구성원에게 Lufthansa 합의 기금(법원에서 승인한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 그리고 위 명시된 대로 그외 기타 승인 받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할당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의 직간접 구매 모두 POA (보상금 할당 계획) 에서 다루어집니다. 위 섹션 I (C)에 명시된대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는 미국 국내, 미국 도착이나 미국 출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Lufthansa 집단 구성원의 비례 보상금 산정을 위해, 서비스 구매 시 사용된 달러 이외 통화는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 의해 2006년 9월 11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달러로 환산됩니다.

A. 정의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의 **직접 구매**는 개인이나 법인이 제 3 자를 통하지 않고서 그러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이용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가 항공 화물 운송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구매입니다. 화물 운송 주선 업체가 항공 화물 운송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구매입니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의 **간접 구매**는 어느 개인이나 법인이 그러한 서비스를 구매하되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요금을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화물 운송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제조사가 화물 운송 주선 업체를 통해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주선하고 화물 운송 주선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 이는 간접 구매입니다.

미국 **출발** 또는 미국 **국내** 화물 운송을 위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구매는 **아웃바운드** 구매입니다. 미국 **도착** 화물 운송을 위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구매는 **인바운드** 구매입니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미국 구매자**는 미국 정주 구매자 입니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외국 구매자**는 미국 이외 지역 정주 구매자입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B. 분배 – 직접 구매

POA(보상금 할당 계획) 는 Lufthansa 합의 기금의 82%(법원에서 승인한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 위에서 명시된 그외 기타 경비 제외)를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직접 구매자에게 할당합니다(“직접 기금”). 직접 기금에서 보상금을 받는 Lufthansa 집단 구성원의 몫을 산정하기 위해, 인바운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즉, 미국 도착) 구매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달러 금액의 1.625 배를 적용할 것입니다. 아웃바운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즉, 미국 출발 또는 미국 국내)에는 이와 같은 배수 적용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및 외국의 모든 직접 구매자 몫을잠정적으로 산정한 후에(즉,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의 달러 금액), POA(보상금 할당 계획) 에 따라 합의 관리자가 직접 구매 보상금 청구자를 미국 직접 구매자와 외국 직접 구매자의 두 그룹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미국 직접 구매자 그룹에 속한 직접 구매 보상금 청구자에게 임시 할당된 몫은 최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미국 직접 구매자에게 임시 할당된 몫으로 형성된 직접 기금의 일부는 유효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미국 직접 구매 보상 청구자들에게 그들의 구매 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될 것입니다.

외국 직접 구매 보상 청구자에게 임시 할당된 몫을 모두 모아 외국 기금을 만들 것입니다. 외국 기금은 그후 다음과 같이 할당될 것입니다. 외국 직접 구매자에게 85% (“외국 직접 기금”) 그리고 외국 간접 이용자에게 15% (“외국 간접 기금”). 외국 직접 기금과 외국 간접 기금에서 보상금을 받는 Lufthansa 집단 구성원의 최종 할당 몫을 산정하기 위해, 인바운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즉, 미국 도착)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달러 금액의 1.625 배를 적용할 것입니다. 아웃바운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즉, 미국 출발 또는 미국 국내)에는 이와 같은 배수 적용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외국 직접 구매자의 달러 금액이 결정된 후, 그러한 보상금에 할당된 몫이 외국 기금에서, 유효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 직접 구매 보상 청구자들에게 그들의 구매 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될 것입니다.

C. 분배 – 간접 구매

위에서 설명한 POA(보상금 할당 계획)에서 정한대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외국 간접 구매자의 달러 금액이 결정된 후, 그러한 보상금에 할당된 비율이 외국 간접 기금에서, 유효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 직접 구매 보상 청구자들에게 그들의 구매 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될 것입니다. 모든 유효한 외국 간접 구매자 보상 청구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후에 외국 간접 기금에서 잔액이 남으면 법원 결정에 따라, 외국 직접 구매자를 위한 외국 직접 기금에 추가될 것입니다.

Lufthansa 합의 기금의 나머지 18%(법원에서 승인한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미국 간접 구매자에게 할당되었습니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미국 간접 구매자에게 할당된 Lufthansa 합의 기금에서 Lufthansa 집단 구성원의 최종 할당몫을 산정하기 위해, 인바운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즉, 미국 도착)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달러 금액의 1.625 배를 적용할 것입니다. 아웃바운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즉, 미국 출발 또는 미국 국내)에는 이와 같은 배수 적용 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간접 구매의 달러 금액이 결정된 후, 간접 기금은 유효한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Lufthansa 집단 구성원에게 그들의 구매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될 것입니다. 간접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머지 잔액은 직접 구매자에게 분배되는 직접 기금에 추가될 것입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VI.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

현재까지, 본 소송건에서 원고 및 제안된 집단(Lufthansa 합의 집단 포함)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아직까지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거나 지출 비용을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나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불확실한 수임료에 기초하여 이 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시간과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서, 합의 집단 변호인단은 변호사가 본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여 지출한 비용(250 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환급뿐만 아니라, Lufthansa 합의 기금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Lufthansa 합의 기금에서 공제되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재정액을 법원에 요구할 것입니다.

VII. 공정 심의회 및 이의 제기 권리

법원은 2008년 12월 12일 오전 11시 30분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미연방 뉴욕주 동부 지방 법원) 세리모니얼 법정, United States Courthouse,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에서 “공정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정 심의회에서 법원은 제안된 Lufthansa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에 대한 집단 변호인단의 요청을 공정 심의회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공정 심의회 시간과 날짜는 때때로 추가 통보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심의회 참석을 원하는 분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ufthansa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은 분은 심의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정식 승인 변호사를 대신 참석시켜 어째서 Lufthansa 합의안이나 다른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법원에서 검토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본 사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와 함께 2008년 11월 12일까지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다음 Lufthansa 합의 집단 변호인단 및 변호인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Deutsche Lufthansa AG, Lufthansa Cargo AG, 및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 변호인단

Eric J. Mahr
Natalya K. Scimeca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
1875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006
(202) 663-6000
Eric.Mahr@wilmerhale.com
Natalya.Scimeca@wilmerhale.com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

<p>Michael D. Hausfeld COHEN, MILSTEIN, HAUSFELD & TOLL P.L.L.C. 1100 New York Avenue, N.W., Suite 500 West Washington, D.C. 20005 (202) 408-4600 mhausfeld@CMHT.com</p> <p>Robert N. Kaplan KAPLAN FOX & KILSHEIMER LLP 850 Third Avenue New York, NY 10022 (212) 687-1980 rkaplan@kaplanfox.com</p> <p>Henry A. Cirillo THE FURTH FIRM LLP 225 Bush Street, 15th Floor San Francisco, CA 94104 (415) 433-2070 hcirillo@furth.com</p> <p>Steven N. Williams (SW-6198) COTCHETT, PITRE & MCCARTHY 840 Malcolm Road, Suite 200 Burlingame, CA 94010 (650) 697-6997 swilliams@cpmlegal.com</p>	<p>Hollis Salzman LABATON SUCHAROW LLP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212) 907-0700 hsalzman@labaton.com</p> <p>Howard J. Sedran LEVIN, FISHBEIN, SEDRAN & BERMAN 510 Walnut Street Philadelphia, PA 19106 (215) 592-1500 hsedran@lfsblaw.com</p> <p>W. Joseph Bruckner LOCKRIDGE GRINDAL NAUEN P.L.L.P. 100 Washington Avenue South, Suite 2200 Minneapolis, MN 55401 (612) 339-6900 wjbruckner@locklaw.com</p> <p>Christopher Lovell LOVELL STEWART HALEBIAN LLP 500 Fifth Avenue, Suite 58 New York, NY 10110 (212) 608-1900 clovell@lshllp.com</p>
--	--

VIII. 주소 변경

만약 이 통보문을 분쟁 조정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 다른 주소에서 수령한 경우,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www.aircargosettlement.com 에서 주소 변경을 하시든가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IX.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

Lufthansa 합의안에 관한 상세 안내는 합의에 관한 공식 웹사이트인 www.aircargosettlement.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에 대한 답변을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이메일(administrator@aircargosettlement.com)로 연락하십시오. 또는 전화로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수신자 부담 전화 1 (800) 749-3518 번을 이용하십시오, 해외에서 미국 및 캐나다 지역 이용 번호로 통화할 때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다음 전화 번호를 이용하십시오 1 (941) 906-4822. 이 번호로 통화할 때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동봉된 수신자 부담 전화 및 각 나라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 전화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주소로 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서면 연락도 가능합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이 통보문은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영어 이외 외국어로 작성된 본 통보문이 필요하시면 위 언급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안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또는 위 주소로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서면 요청이나 이메일 주소(administrator@aircargosettlement.com)로 연락하십시오.

X. 추가 안내

Lufthansa 합의안 및 이 소송건에서 제출된 그외 서류들은 온라인 www.aircargosettlement.com 에서 보실 수 있으며 정상 근무 시간 동안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문이나 Lufthansa 합의안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열거된 합의 집단 변호인단 중 어느 변호사에게나 아래 명시된 주소로 서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Michael D. Hausfeld
COHEN, MILSTEIN, HAUSFELD & TOLL P.L.L.C.
1100 New York Avenue, N.W.,
Suite 500 West
Washington, D.C. 20005
(202) 408-4600
mhausfeld@CMHT.com

Robert N. Kaplan
KAPLAN FOX & KILSHEIMER LLP
850 Third Avenue
New York, NY 10022
(212) 687-1980
rkaplan@kaplanfox.com

Henry A. Cirillo
THE FURTH FIRM LLP
225 Bush Street, 15th Floor
San Francisco, CA 94104
(415) 433-2070
hcirillo@furth.com

Steven N. Williams (SW-6198)
COTCHETT, PITRE & MCCARTHY
840 Malcolm Road, Suite 200
Burlingame, CA 94010
(650) 697-6997
swilliams@cpmlegal.com

Hollis Salzman
LABATON SUCHAROW LLP
140 Broadway
New York, NY 10005
(212) 907-0700
hsalzman@labaton.com

Howard J. Sedran
LEVIN, FISHBEIN, SEDRAN & BERMAN
510 Walnut Street
Philadelphia, PA 19106
(215) 592-1500
hsedran@lfsblaw.com

W. Joseph Bruckner
LOCKRIDGE GRINDAL NAUEN P.L.L.P.
100 Washington Avenue South, Suite 2200
Minneapolis, MN 55401
(612) 339-6900
wjbruckner@locklaw.com

Christopher Lovell
LOVELL STEWART HALEBIAN LLP
500 Fifth Avenue, Suite 58
New York, NY 10110
(212) 608-1900
clovell@lshllp.com

판사나 법원 서기에게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날짜: 2008 년 4 월 4 일

법원 명령에 의함

Clerk of Court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United States Courthouse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Y 11201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 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 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 (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NUTECH BRANDS INC. v. (대) AIR CANADA CARGO et al (외)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온타리오 고등법원) Court File No. 50389CP (법원 서류 번호 50389CP)
KAREN McKAY v. (대) ACE AVIATION HOLDING INC. et al (외)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법원) Vancouver Registry No. S-067490 (밴쿠버 등록 번호 S-067490)
CARTISE SPORTS INC. v. (대) DEUTSCHE LUFTHANSA AG et al (외)	Québec Superior Court (퀘벡 고등법원) 500-06-000344-065

캐나다 집단 소송 피고와의
제안된 합의에 관한 통보문
DEUTSCHE LUFTHANSA AG, LUFTHANSA CARGO AG 및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

이 통보문은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신: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화물 운송업자를 통해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모든 개인과 법인을 비롯하여 어느 항공 화물 운송 업체이든지, 이를 통해 캐나다 국내, 캐나다 도착, 캐나다 출발 항공 화물 운송(미국 캐나다 간 화물 운송은 제외) 서비스를 구매한 모든 개인과 법인.

귀하의 법적 권리가 Deutsche Lufthansa AG, Lufthansa Cargo AG 및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이하 본 통보문에서는 3사 모두 “Lufthansa”로 명명함)를 상대로 캐나다에서 제기되어 계류 중인 몇몇 집단 법률 소송 합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께 이 통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소송들은 캐나다 국내, 캐나다 도착, 캐나다 출발 화물 운송(미국과 캐나다 간 화물 운송은 제외)을 위해 Lufthansa의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귀하 및 다른 집단 소송 구성원을 대리한 몇몇 원고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Lufthansa는 다수의 다른 항공 화물 운송 회사와 함께 캐나다의 경쟁법을 위반하여 항공 화물 운송료 가격 담합을 공모하였습니다. Lufthansa는 캐나다측 원고들과 합의를 체결했으며, 여기에는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Lufthansa가 캐나다 집단 소송들의 원고측에게 USD \$5,338,000을 지급하고 또한 소송 집단이 원고측이 주장한 가격 담합에 참여한 다른 항공 화물 운송업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Lufthansa가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집단 소송건이 미국에서 현재 계류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원고측과 Lufthansa가 합의 계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간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하신 분은 미국 합의안의 집단 소송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미국 집단 소송의 제안된 합의에 관한 통보문을 참조하여 귀하의 권리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미국 합의안과 미국 집단 소송의 제안된 합의에 관한 통보문은 www.aircargosettlement.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I. 집단 소송이란 무엇인가?

집단 소송이란 여러 사람의 손해 배상 청구와 권리가 원고측 대표가 제기한 단일한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법적 소송입니다. 집단 소송을 통해 수백 또는 수천 명의 개인들이 비슷한 법적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이 방지되고 법원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유사한 청구권을 지닌 사람들이 유사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집단 소송에서 원고측 대표와 집단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제기한 집단 손해 배상 청구 요청과 해결(여기서는 합의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 집단 변호인단”)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 집단 변호사는 법원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합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변호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 그러한 모든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는 합의금을 통해 지급될 것입니다.

II. 캐나다 집단 소송 개요

Lufthansa에 대해 제기된 집단 소송은 현재 각각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온타리오 고등법원), 및 Québec Superior Court(퀘벡 고등법원) (모두 통칭하여 “캐나다 집단 소송”이라고 명명함)의 캐나다 법원 3곳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Lufthansa와 다른 피고들은 특히 부풀려진 할증료 부과, 항공 화물 운송에 부과된 가격 할인의 철폐 또는 방지, 수익 및 고객 할당에 대한 합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항공 화물 운송료의 담합, 인상, 유지, 또는 고착화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캐나다 합의 집단 구성원들은 이러한 부당 행위가 없었을 경우 지불했어야 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캐나다 집단 소송에서는 주로 피고측에 의해 부과된 할증료에 대해 다룹니다. 할증료란 정상적인 항공 화물 운송료에 추가되는 수수료로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항공 화물 운송 회사가 연료비 인상, 미국의 2001년 9월 공격 사건 이후 도입한 보안 수단과 관련된 비용 인상 등을 비롯한 몇몇 외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과합니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피고들이 거둔 수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할증료 설정 공모에도 참여했습니다.

Lufthansa측의 변호사 및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은 각각, 원고측이 주장한 피고측의 행위로 인해 합의 집단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경제적 측면의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측은 캐나다 합의안의 이행에 앞서, 이 사건의 손해 배상 청구와 변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III. 제안된 캐나다 합의안 요약

다음은 제안된 캐나다 합의안에 관한 요약 설명입니다. 캐나다 합의안은 본 소송 사건을 위해 제작된 웹사이트(www.aircargosettlement.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 합의안 승인 절차

캐나다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캐나다 법원 3 곳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합의안 승인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을 위해 각 법원에서 공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합의안의 이행은 미국 합의안에 대한 U.S. Court(미국 법원)의 승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미국 합의안이 U.S. Court(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캐나다측 원고들과 Lufthansa는 각각 캐나다 합의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B. 캐나다 합의안 개요

1. 합의 집단 구성원 및 대표

캐나다 합의안에 따라 3개의 합의 집단이 구성됩니다. 각각의 합의 집단은 단일 법원 관할입니다. 그러므로, 브리티시 콜럼비아 거주 법인 및 개인은 브리티시 콜럼비아 합의 집단과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 관할입니다. 퀘벡 거주 법인과 개인은 (종업원 수 50인 이하 회사 포함) 퀘벡 합의 집단을 구성하며 **Québec Superior Court**(퀘벡 고등법원) 관할입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합의 집단 또는 퀘벡 합의 집단에서 제외된 법인과 개인은 온타리오 합의 집단과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온타리오 고등법원) 관할입니다.

총괄적으로, 브리티시 콜럼비아 합의 집단, 퀘벡 합의 집단, 그리고 온타리오 합의 집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사이에 화물 운송 주선 업체를 통해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개인을 비롯하여, 어느 항공 화물 운송 업체(피고들, 구체적으로는 **Lufthansa**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이든지, 이를 통해 캐나다 국내, 캐나다 도착, 캐나다 출발 항공 화물 운송(미국 캐나다간 화물 운송은 제외) 서비스를 구매한 모든 개인들. 피고들, 피고들의 모기업, 종업원, 자회사, 제휴사, 임원과 중역들은 본 합의 집단(들)에서 제외됨.

하나 이상의 합의 집단 구성원이 되려면 반드시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사이에 최소 1회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했어야 합니다.

위 명시된 기간 내에 미국과 캐나다간 화물 운송을 위해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캐나다 합의안이 아닌 미국 합의안에 속하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간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미국 집단 소송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미국 집단 소송의 제안된 합의에 관한 통보문을 참조하여 귀하의 권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다음은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을 구성한 법률 고문 회사들입니다. **Siskinds^{LLP}**, **Sutts, Strosberg^{LLP}**, **Harrison Pensa^{LLP}**, **Camp Fiorante Matthews** 및 **Liebman & Associés**.

2. 합의 집단에 대한 캐나다 합의안의 보상 내용

캐나다 합의 기금: 캐나다 합의안 조항에 따라, **Lufthansa**는 캐나다 합의 집단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 기금에 **USD \$5,338,000**을 지불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협력: 캐나다 합의안 조항에 따라, **Lufthansa**는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 및/ 또는 그들의 전문가들이 모든 소송 절차, 조서, 미국 합의 집단 변호인단이 미국 합의안 조항에 따라 참석하는 변호사 미팅이나 인터뷰, 그리고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이 위 명시된 기간 동안의 캐나다 국내, 캐나다 도착, 캐나다 출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하는 변호사 미팅이나 인터뷰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캐나다 합의 집단은 또한 **Lufthansa**가 미국 합의 집단 변호인단에게 협력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앞으로 제공할 모든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Lufthansa**는 캐나다 합의안의 특정 조항에 따라, 현직이나 전직 중역, 임원 및 직원들에게 인터뷰, 사건 관련 진술 및/ 또는 진술서, 조서 및 법정 증언에 대비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Lufthansa**는 전직 중역, 임원 및 직원이 인터뷰, 조서 및 법정 증언에 출두하여 진술 및/ 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위에서 요약한대로, Lufthansa는 합의 집단이 소송에서 당사자로 명명된 피고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광범위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Lufthansa가 캐나다 합의안을 이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고측이 주장한 불법 행위를 시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Lufthansa는 원고측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여러 가지 변론을 펼칠 것입니다.

C. 면제

합의안이 최종적인 것이 되면, 집단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손해 배상 청구로부터 LUFTHANSA를 면제할 것이며 그러한 면제와 캐나다 합의안에 포함된 불고소 조항은 구속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이미 개시하였거나 개시하여 그러한 절차를 퀘벡 집단 탈퇴 마감일까지 중단하지 못한 퀘벡 합의 집단 구성원들은 이미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캐나다 합의안에 포함된 면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합의안이 발효되는 즉시, 그리고 합의 금액 지급을 고려하여, 또한 본 [합의안]에 명시된 Lufthansa의 지속적인 본 합의안 준수 의무를 비롯, 합의안에 명시된 그외 기타 중요한 조항들을 고려하여, 면제 당사자는 이로써 면제받은 당사자를 본 면제 받은 손해 배상 청구로부터 또는 어떤 식이든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배상 청구로부터 영구히 면제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제받은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수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Lufthansa, 그리고 이를 대리하는 모든 전현직, 직간접, 전임자, 승계자, 모기업, 자회사, 디비전, 부서, 제휴사, 상속자, 집행자, 관리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간부, 임원, 주주, 파트너, 대리인, 변호사, 하수인, 직원, 그리고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상기 전술 내용에도 불구하고, “면제받은 당사자”에는 과거에 또는 현재 소송에서 거명되거나 또는 향후 소송에서 거명될 수 있는 그외 다른 피고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제 당사자”는 개별적 및 집단적으로, 원고 및 원고를 대리한 집단 구성원, 그리고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를 통해 상속자, 관리자, 수증자, 전임자, 후임자, 모기업, 자회사, 모든 유형의 대리인, 주주, 파트너, 임원, 모든 유형의 소유주, 제휴사, 양수인, 에이전트, 직원, 하청업체, 변호사,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으로, 명시된 방식과 일정에 따라 유효하게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본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자, 그리고 원고를 대리한 집단 변호인단, 또한 이들에 의해, 또는 이들을 통해 상속인, 관리인, 수증자, 전임자, 후임자, 모기업, 자회사, 모든 유형의 대리인, 주주, 파트너, 임원, 모든 유형의 소유주, 제휴사, 에이전트, 직원, 하청업체, 변호사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면제된 손해 배상 청구”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미심쩍거나 확실한, 단정적이거나 불확실한, 예측된 것이나 의외인, 사실상의 또는 우발적인, 청산 또는 미청산 손해 배상 청구 (구체적으로, 화물 운송료, 연료 할증료, 보안 할증료, 세관 할증료, 전쟁 위험 할증료, 네비게이션 할증료, 수수료, 인센티브, 리베이트, 크레딧, 그리고 이익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를 비롯하여 연방법이나 지방법, 법원 명령이나 보통법 또는 그외 기타 법률, 법전, 규칙 또는 외국이나 해외 다른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지역의 법적 관할권 규정을 근거로 하든지 “면제받은 청구”는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가격이나 보수에 기인하여 (구체적으로, 화물 운송료, 연료 할증료, 보안 할증료, 세관 할증료, 전쟁 위험 할증료, 네비게이션 할증료, 수수료, 인센티브, 리베이트, 크레딧, 그리고 이익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배상 청구로서, 어떤 소송이나 어느 법원 또는 포럼, 어느 국가나 전세계 법적 관할권의 법적 절차에서 법적 이론과 상관없이, 그리고 제기된 피해 구제나 보상 유형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면제 당사자들 중 그 누구든지에 의해 주장되거나 주장될 수 있었거나 또는 향후 주장될 수 있는 손해 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본 문서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본 합의안 이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와만 연관된 어떠한 손해 배상 청구도 “면제된 손해 배상 청구”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합의안에 포함된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면제가 그외 모든 불법 행위자에 대한 면제를 구성하는 지방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합의 집단 구성원들의 경우, 캐나다 합의안에는 그러한 합의 집단 구성원들이 Lufthansa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나, 그 대신, Lufthansa를 고소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배상 청구도 하지 않으며 또는 이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어떤 사법 관할 지역에서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청구를 개시하거나 지속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Lufthansa 면제받은 당사자에 대해 본 면제된 손해 배상 청구 이외에 그 어떤 손해 배상 청구도 캐나다 집단 합의안에 따른 해결이나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전현직 또는 미래의 피고나 공모자 또는 면제받은 당사자 이외 기타 개인이나 법인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합의 집단 구성원의 권리는 특별히 원고와 캐나다 합의 집단 구성원에 의해 보존됩니다.

D.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 수수료 및 비용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의 수수료, 지불금, 및 세금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캐나다 합의 기금에서 지불될 것입니다.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 수수료는 캐나다 합의 기금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안 승인일까지 발생한 지출금과 세금은 법원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은 향후 최대 CDN \$500,000까지의 불리한 비용 재정액 그리고 향후 최대 CDN \$500,000까지의 지출금을 캐나다 합의 기금으로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 명령 신청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V. 추후 안내 및 합의에 따른 배상금 수령을 위한 등록 절차

캐나다 합의 소송 변호인단은 캐나다 합의 소송 구성원의 향후 이익을 위해 캐나다 합의 기금을 보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통보문을 우편으로 수령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통보문을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 등록하여 캐나다 합의 기금의 향후 분배에 관한 공지를 비롯하여 추가 정보가 여러분께 우편으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www.aircargosettlement.com에서 온라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다음 주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로 전화하셔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수신자 부담) 지역은 1 (800) 749-3518번; 해외 지역은 (통화료 부과) 1 (941) 906-4822번을 이용하십시오. 각 지역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보문에 동봉되며 온라인상으로도 제공됩니다. 여기 안내된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 주소로 등록 신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V. 집단 탈퇴 절차 안내

집단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는 캐나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본 합의안의 조항들은 집단 소송 구성원들에 대해 구속력을 지닙니다. 캐나다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로 선택할 경우, 모든 손해 배상 청구나 가격 담합과 같은 경쟁법 위반 행위를 주장하는 법적 절차, 또는 항공 화물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행위와 관련된 기타 손해 배상 청구를 일체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캐나다 집단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캐나다 집단 소송에서 탈퇴한 구성원의 경우, 캐나다 합의안에 참여하거나 비화해 피고인에 대해 달성된 그외 모든 추가적 합의 또는 판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타리오 및/또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합의 집단: 이들 집단 소송 중 하나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탈퇴 요청서를 등기 우편, 반송 영수증 요청, 우편료 선납 방식으로 다음 주소로 제출하되, 2008년 11월 12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퀘벡 합의 집단: 퀘벡 합의 집단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 탈퇴 요청서를 등기 우편, 반송 영수증 요청, 우편료 선납 방식으로 다음 주소로 제출하되, 2008년 11월 12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Clerk of the Superior Court of Québec
1 Notre-Dame Street East
Montréal, Québec H2Y 1B6

필수 정보: 모든 캐나다 집단 소송 탈퇴 요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앞서 고지된 기간 동안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 집단 소송 탈퇴를 요청하는 모기업, 자회사나 제휴사뿐만 아니라 요청인 또는 요청인의 비즈니스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상호나 회사 명칭
- 사건명 (*Canadian Air Cargo Shipping Services Class Actions [캐나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집단소송]*)
- 탈퇴 희망 집단
- 2000년 1월1일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요청인이 이용한 항공 화물 서비스 이용료
- “본인은/우리는 이로써 *Canadian Air Cargo Shipping Services Class Action(캐나다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 집단 소송)*에 대해 제기된 합의 집단에서의 탈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서명 진술.

비록 이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행위에 기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근거로 피고 중 그 누구에 대해서든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더라도 캐나다 집단 소송에서 탈퇴하려면 반드시 위 명시된 방식대로 마감일까지 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이미 개시하였거나 개시하여 그러한 절차를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퀘벡 집단 탈퇴 마감일까지 중단하지 못한 퀘벡 합의 집단 구성원들은 이미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VI. 합의안 승인 심의회

소송 집단 구성원이 합의안 승인 심의회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합의안이 발효되려면 각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반드시 캐나다 합의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합의안 동의에 관한 심리는 2009년 1월 28일 오전 10시 런던 소재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온타리오 고등법원), 2009년 3월 9-10일 오전 9시 몬트리올 소재 Superior Court of Québec(퀘벡 고등법원), 그리고 2009년 2월 27일 오전 10시 밴쿠버 소재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에서 각각 진행될 것입니다. 합의 집단 구성원은 캐나다 합의안에 관한 심의회에 출석하여 중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 통보서를 2008년 11월 12일까지 아래 명시된 변호사 앞으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p>퀘벡 합의 집단 구성원이 아닌 그외 다른 합의 집단 구성원의 이의 제기는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Charles M. Wright Siskinds LLP 680 Waterloo Street London, ON N6A 3V8 1-800-461-6166</p> <p>퀘벡 합의 집단 구성원의 이의 제기는 퀘벡 합의 집단 변호인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rwin Liebman Liebman Associés 1 Westmount Square #1500 Montreal, Québec H3Z 2P9 (514) 846-0666</p>	<p>Robert E. Kwinter Blake, Cassels & Graydon LLP 199 Bay Street Suite 2800, Commerce Court West Toronto, ON M5L 1A9 (416) 863-2400</p> <p>Deutsche Lufthansa AG, Lufthansa Cargo AG 및 Swiss International Air Lines Ltd.의 캐나다 변호인단</p>
---	---

모든 중재 요청서는 해당 법원으로 전달될 것이며 모든 서면 통보서는 해당 법원에서 참작할 것입니다. 2008년 11월 12일까지 서면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두상 또는 그외 다른 방법을 통해 합의안 승인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심의회 일시는 추후 통지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I.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

합의에 관한 추가적 안내는 합의에 관한 공식 웹사이트인 www.aircargosettlement.com에서 제공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의 이메일 주소 목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지역은 (수신자 부담) 1 (800) 749-3518번; 해외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지역은 (통화료 부과) 1 (941) 906-4822번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통화할 경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각 국가별 수신자 부담 전화와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우편 발송된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www.aircargosettlement.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다음 주소로 연락하셔도 전화 번호 목록을 제공해드립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이 통보문은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영어 이외 외국어로 작성된 본 통보문이 필요하시면 위 언급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안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또는 위 주소로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서면 요청이나 이메일 주소 (administrator@aircargosettlement.com)로 연락하십시오.

VIII. 추가 안내

캐나다 합의 집단 구성원의 성명이나 주소에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본 통보문 수령 이후 구성원 성명 및/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www.aircargosettlement.com 이나 다음 주소로 서면 통보하셔도 됩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섹션 VII에 명시된 연락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통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 집단과 관련하여 본 통보문에 포함된 문제에 대한 모든 문의는 캐나다 합의 집단 변호인단에 다음 주소로 서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p>퀘벡 합의 집단 구성원이 아닌 그외 다른 합의 집단 구성원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Charles M. Wright Siskinds LLP 680 Waterloo Street London, ON N6A 3V8 1-800-461-6166</p>	<p>퀘벡 합의 집단 구성원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Irwin Liebman Liebman Associés 1 Westmount Square #1500 Montreal, Québec H3Z 2P9 (514) 846-0666</p>
---	--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이 통보문은 단지 캐나다 합의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캐나다 합의 집단 구성원에게 합의안 전문을 검토하실 것을 권장하며 합의안 사본은 무료로 www.aircargosettlement.com에서 배포합니다. 다음 주소로 합의 보상 청구 처리 담당에게 서면으로 복사본을 요청하시면 \$20의 비용으로 복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Air Cargo Settlement, c/o The Garden City Group, Inc., P.O. Box 9162, Dublin, OH 43017-4162 USA.

법원에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본 통보문은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온타리오 고등법원),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 및 QUÉBEC SUPERIOR COURT (퀘벡 고등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의 연락처 미국 및 캐나다는 (수신자 부담) 1(800) 749-3518번;
해외 (통화료 부과): 1(941) 906-4822; 또는 www.aircargosettlement.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각 국가별 Air Cargo Settlement(항공 화물 합의) 문의 연락처 수신자 부담 및 통화료 부과 전화 번호 목록은 본 통보문에 동봉되어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